

직 제 규 정

제	정	2005. 04. 06.
개	정	2006. 04. 06.
개	정	2006. 10. 12.
개	정	2006. 12. 27.
개	정	2007. 07. 10.
개	정	2008. 07. 02.
개	정	2008. 10. 14.
개	정	2009. 02. 09.
개	정	2009. 05. 04.
개	정	2010. 09. 17.
개	정	2010. 12. 28.
개	정	2011. 12. 30.
개	정	2012. 05. 09.
전문개정		2015. 03. 30.
개	정	2015. 10. 12.
전문개정		2018. 07. 20.
개	정	2018. 09. 10.
개	정	2018. 12. 28.
개	정	2019. 02. 01.
개	정	2019. 03. 28.
개	정	2019. 12. 30.
개	정	2020. 04. 07.
개	정	2022. 04. 0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북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12.>

제2조(적용 범위) 연구원의 조직 및 업무분장에 관하여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장 조 직

제3조(원장)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직제규정

제4조(조직) ①연구원에 연구본부, 연구기획부, 산업경제연구부, 지역개발연구부, 사회문화연구부, 행정지원부를 둔다.

②본부장, 부장은 연구위원 및 관리직 3급 이상 중에서 보하며, 하부조직의 장은 원장이 정한다. 파견 공무원에게 직책을 부여 할 경우에는 인사규정 제10조에 의한 임용자격기준에 의한다.

③연구원에 부설기관으로 여성정책연구소, 전북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를 둔다. 단, 여성정책연구소는 특별부설기관으로 하고, 연구소에 전북성별영향평가센터를 둔다. <개정 2018.12.28., 2019.12.30., 2022.4.1>

④부설기관의 정원은 직제규정에 명시하며, 여성정책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그 외 기관은 각 사업운영지침 등에 따른다.(개정 2018.12.28)

제5조(연구자문위원회) 연구원에 연구자문위원회를 둔다.

제5조의 2(운영위원회) 연구원의 의사결정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8.9.10.>

제6조(하부 조직) ①연구원의 연구 활동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조직의 개편은 원장이 행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조직의 하부 조직
2.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하부 조직

②제1항에 의한 하부 조직을 설치하였을 경우, 원장은 그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한시 조직) 연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년 이하의 한시 조직으로서 통합연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8조(기구 및 정원) ①연구원의 기구와 직종 및 정원은 <별표 1, 2, 3>와 같다. <개정 2018.12.28., 2019.3.28., 2019.12.30., 2020.4.7., 2022.4.1>

②각 부서별, 직종별 인원은 정원 총수의 범위 안에서 원장이 정한다.

제9조(정원 외 직원) ①원장은 각 개별 과업수행 및 연구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초빙연구위원 및 위촉 연구원·행정원 등을 당해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정원 외 직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9.2.1.>

②정원 외 직원의 임면 및 처우에 관한 기준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직무대리) ①직무대리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구본부장이 그 직무대리를 하며, 연구본부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규정에 의하여 연구기획부장, 산업경제연구부장, 지역개발연구부장, 사회문화연구부장 등이 직무대리를 한다. <개정 2018.9.10.>

직제규정

2. 부서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소속 부서 직원 중 직급 순에 따른 선임직원이 직무대리를 한다. <개정 2018.9.10.>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대리자가 확정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원장이 대리할 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9.10.>

제3장 업무분장

제11조(연구본부) 연구본부는 연구본부 업무를 감독, 총괄하며 하부조직에 대한 업무를 조정 한다.

제12조(연구기획부) 연구기획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연구원비전(중장발전계획·사업계획·예산편성)
2. 경영평가, 경영계획 및 연구사업 운영
3. 연구자문위원회 운영, 연구기획·운영지원
4. 이사회 운영, 규정 관리
5. 직원 및 연구과제 평가 관리
6. 도의회, 대내외 감사, 대외협력
7. 도민소통, 청렴도, 고객만족
8. 보도자료, 홍보 및 자료실 운영
9. 국내외 협력기관, 전국 시도연구원협의회 및 호남·제주권 연구기관협의회 교류
10. 연구 관련 정보 및 자료수집과 관리
11. 연구보고서 출간, 간행물, 이슈브리핑
12. 정보보안, IT 인프라, 메일링서비스
13. 홈페이지 운영, 전산업무
14. 연구성과물, 대내외 자료축적 및 DB화

제13조(산업경제연구부) 산업경제연구부는 산업전략, 지역경제, 소상공인, 미래산업, 지역통계, 농식품산업, 농촌융복합산업, 농어업·농어촌, 사회적경제 등에 관한 연구를 분장한다.

제14조(지역개발연구부) 지역개발연구부는 지역균형발전, 도시·지역계획, 도시재생, 지역개발, 주택·건설, 교통·물류·SOC, 새만금개발, 수질·환경, 안전 등에 관한 연구를 분장한다.

제15조(사회문화연구부) 사회문화연구부는 사회정책, 사회복지, 교육, 문화, 관광, 체육, 지방행정·재정, 미래정책, 지역공동체 등에 관한 연구를 분장한다.

제16조(행정지원부) ①행정지원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조직관리, 인사, 교육업무

직제규정

2. 복무관리, 후생복지
3. 문서관리, 사무업무
4. 노무관리
5. 청사, 시설, 차량 관리
6. 구내식당 운영
7. 법인카드 관리
8. 지출원인행위 및 출납, 결산
9. 연봉 및 총액인건비 관리
10. 제보험, 제세금 업무
11. 위·수탁 용역·공사·물품 계약
12. 자금 및 기금운용, 자산관리
13. 물품관리
14. 기타 원장이 부여하는 업무

제17조(TF팀 및 특별 연구조직) ①원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TF팀 및 특별 연구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②TF팀 및 특별 연구조직의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18조(관장 사항의 결정 등) ①업무관장 부서가 불분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장이 정한다.

②원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부서의 업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위임 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 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4.6.>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 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0.12.>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 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2.27.>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 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7.10.>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 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7.2.>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 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0.14.>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 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 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본 직제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회계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회계관직 지정) 분임정수관, 지출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중 “경리과장”을 “행정실장”으로 한다.

부 칙 <2009.5.4.>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 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9.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지사가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부설기관인 여성정책연구소 예산은 2011.1.1부터 독립적으로 운용한다.

부 칙 <2010.12.28.>

직제규정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 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12.30.>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 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5.9.>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 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3.30.>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 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10.12.>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 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7.20.>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 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9.10.>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 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12.28.>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 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2.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 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3.28.>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 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직제규정

부 칙 <2019.12.30.>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 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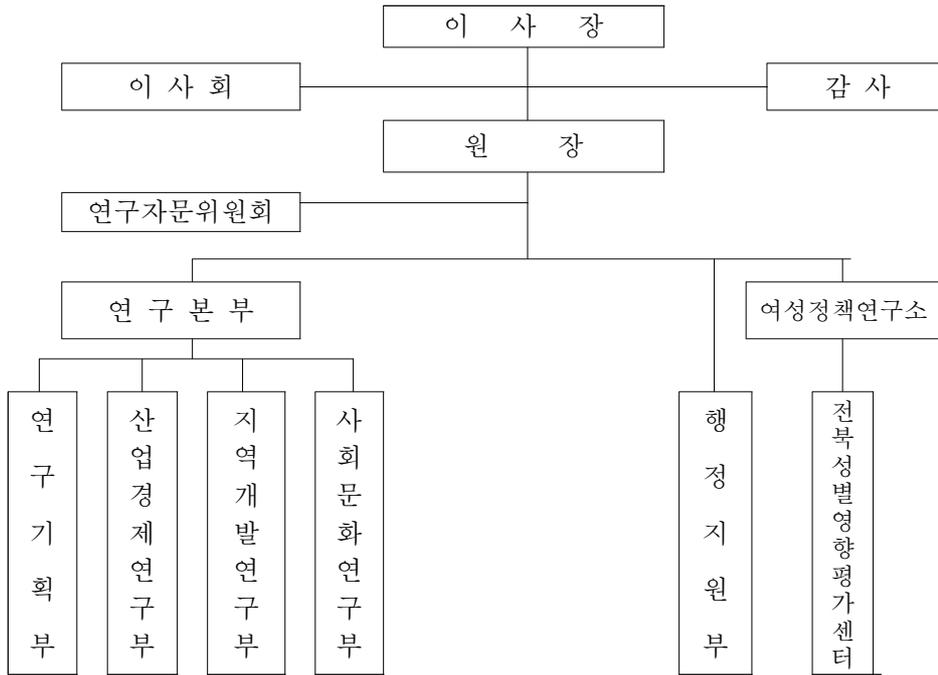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 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4.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북도 지사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18.9.10., 2018.12.28., 2019.3.28., 2019.12.30., 2022.4.1>

기 구 표



직제규정

<별표 2><개정 2018.12.28., 2019.2.1., 2022.4.1>

정 원 표

직 별	직 급	정 원	
계		65	
임 원(상 근)	원 장	1	
연 구 직	선임연구위원 가급	27	
	선임연구위원 나급		
	연구위원 가급		
	연구위원 나급		
관 리 직	2 급	6	
	3 급		
	4 급		
	5 급		
정 보 직	가 급	1	
	나 급		
	다 급		
전 문 직	전문연구원	가 급	24
		나 급	
		다 급	
	전문행정원	가 급	3
		나 급	
		다 급	
공 무 직	청 소 원	2	
	정 리 원	1	

<별표 3><개정 2018.12.28., 2019.2.1., 2019.12.30., 2020.4.7., 2022.4.1>

부설기관 정원표

1. 여성정책연구소

직 별	직 급	정 원
계		6
여성정책연구소	소 장	1
연구 직	선임연구위원 가급	4
	선임연구위원 나급	
	연구위원 가급	
	연구위원 나급	
관리 직	2급	1
	3급	
	4급	
	5급	

2. 전라북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직 별	직 급	정 원
계		2
공 무 직	전담연구위원 가급	2
	전담연구위원 나급	